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2. 9.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1998. 12 . 29 .

다. 상정일자 : 1998. 12. 29.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나. 신체·정신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는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다.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3. 주 요 내 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

나. 직권면직 사유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
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

다.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

라.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설

4.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이상 61에서 60세로, 6급이하 58세에서 57세로 '98.9.19일 개정된 입법취지에 따라

나. 인력수급 사정,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를 고려한 별정직 공무원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하고

다. 직권면직 사유중 「신체·정신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신체·정신장애로 평창군 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기간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라. 휴직사유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

마. 휴직제도에 있어 미미한 부분을 개선하여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구 및 내용에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